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32
----------	-----

2023. 10. 18.(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3년 10월 4일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2023년 10월 16일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정범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3주체(교원-학생-학생의 보호자) 간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을 기반으로 교원의 교육활동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기본원칙(안 제3조)
- 교육감, 학교장, 교원의 책무와 보호자 및 학생 의무(안 제4조 ~ 안 제8조)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안 제9조)
-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안 제10조)
- 학교 내 출입 관리 등 안전 대책(안 제11조)
-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감사·수사(안 제12조)
- 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안 제13조)
-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등(안 제15조)
-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안 제16조)
- 실태조사(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제정이유

- 지난 7월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민원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학교 교육 현장의 무너진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의 죽음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가시화됨.
-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교사에 대한 학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벗어난 수업 태도와 언행 등으로 인한

교육 현장에서의 무너진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 사건들이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확립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교육계는 물론 정부와 정계 등 사회 전반에서 커지게 됨.

-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2천662건이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 19 여파로 2020년 1천197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 2천269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와 2022년에는 3천 35건으로 급증하였음.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비율(2.2%), 모르는 체하거나 참고 넘기고, 혼자 해결한다는 비율 (51.7%): 교육활동 침해 시 교사의 대응에 대한 2022년 한국교총 자료

- 이 같은 현상은 충북도 마찬가지로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조사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활동 침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8건에서 2022년에는 112건 2배 이상 증가했고, 2023년 6월까지 상반기에만 53건이 발생함. (첨부자료 1)

<충북 교권 침해 현황>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건수	48건	72건	32건	61건	112건

(자료 출처: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 증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정과 사기를 저하시키며,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8월 22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³⁾,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⁴⁾ 후 2023년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공포·시행하였음⁵⁾.

○ 또한 국회에서는 2023. 9. 21. 이른바 ‘교권회복 4법’ 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⁶⁾을 의결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좀 더 확고히 하였으며, 이어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추진이

-
- 3) 교육부 :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1~30쪽)
“2023년은 교권 회복의 원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보도자료 2023. 8. 22)
- 4) 「초·중등교육법」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3. 9. 27.>[본조신설 2022. 12. 27.]
- 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 보호자의 의무 사항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및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주요 개정 내용임.
「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진행되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현 우리 사회의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실태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하며, 교권회복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7일 개정된 상위 법령들과 2023년 8월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올바른 공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한 ‘학교’, ‘교원’, ‘교육활동’,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본 조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교원’의 경우 본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교원과 기간제 교원임을 명확히 명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활동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생활지도를 ‘교육활동’의 정의로 규정하여, 본 조례에서의 교육활동 보호 범위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원의 교수학습 지도와 학생 생활지도 전반을 의미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에는 교육감의 책무 사항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운영, 피해 교원 지원 및 보호조치, 학교 민원 처리 환경 조성 및 운영 체계 구축,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 시책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음.

- 교육감은 충청북도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책임지며 교원에 대한 인사를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충청북도 내 교원의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현장의 실제적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 조항의 필요성과 조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됨.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교육감의 책무 규정에 법률적 지원’ 반영

○ 안 제5조에는 학교장의 책무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권보호책임관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지원과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학교장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활동의 총책임자로서 체계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맞춤형 보호조치가 실질적이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조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안 제6조에는 교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보호자와 학생의 의무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 교육 3주체가 상호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과 교육적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교 교육 풍토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규정이라 판단됨.
 - 특히, 제8조의 보호자 의무 사항은 지난 9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와 「유아교육법」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에 신설 규정으로 추가하여 강조되고 있는 만큼 내용적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조문이라 사료됨.
 - 다만, 학교별로 교사와 학생 및 보호자 간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질적 실행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을 통하여 서로 간의 충돌을 사전에 막고 갈등을 해소하며, 각 주체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통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피해 분쟁 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및 상해·상담·심리 치료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운영,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즉시 분리 및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 교육활동 공간 내 비상벨 설치 및 영상·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 같은 규정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교육현장 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적인 사항들로서 지난 9월 개정을 통하여 신설·보완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제20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규정⁷⁾,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⁸⁾ 등과 함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와 분리 조치 된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방법 마련’과 관련된 사항 반영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9. 27.]

[중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19조

8)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3. 9. 27.>

[본조신설 2022. 12. 27.]

○ 안 제10조에는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교원 동의 없이 교원의 개인정보 제공 금지, 천재지변이나 긴급 비상 상황을 제외한 수업·근무 시간 외 시간의 학생·보호자 등의 상담 요청 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항은 교원이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며 교원의 교육활동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당한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11조에는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 방문객 출입 수칙 등을 마련하여 학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퇴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과 교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학교 출입시설에 대한 사전 조사와 함께 예산 및 시설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출입 관리가 지나치게 통제됨에 따라 보호자 등의 학교 교육 활동 참여 권리나 지역주민들의 학교 시설 활용 등이 과도하게 제한 되지 않도록 신중한 시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학교 방문객 출입 수칙 마련과 퇴거 요청

불응 시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 반영

- 안 제12조에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감사·수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원의 민원 등에 대한 조사·감사·수사 과정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13조에는 학교장을 민원 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 응대 일원화 체계와 민원 사전 예약체계 구축, CCTV·비상벨 등이 설치된 상담 공간 마련 등과 같은 민원 처리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민원 상담 거부·중단·종결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폭언이나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최근 일부 학부모 등의 반복·악성 민원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침해하며 교원들이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교권 회복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으며 재인식되고 있음.
 -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 조항은 민원 처리에 대한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들의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규정이라 사료됨.

- 다만,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는 교육활동 보호 민원 응대 일원화 체계 구축(민원 응대 팀) 시, 민원응대 팀원들 간 편중된 업무 과중과 악성 민원 응대 고충 등으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 간 야기될 수 있는 갈등 방지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팀 직원들 보호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원 응대 팀 구성과 운영 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4조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항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개정된 「교원지위법」 제29조에 근거하여, 현재 2017년 3월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센터명을 변경하고, 기존의 ‘교권보호지원센터’가 교원들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책 개발과 지원사업 추진을 총괄하며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체계구축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새롭게 재구축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5조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6조에는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원 이외에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본 조례에 준용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임.
- 현재 학교에는 「유아교육법」 제23⁹⁾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2조¹⁰⁾에 근거하여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영어·음악·체육 다문화 언어 등의 강사, 명예 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들(생활지도 포함)은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이 같은 측면에서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과 생활 지도 등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종사자들의 교육활동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할 것임.

9)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 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 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같은 관점에서 교원 이외에 교육활동 참여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본 조례에 준용하도록 한 본 조항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은 당위성이 인정되는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 공청회에서 제시된 교원 이외의 학교 교육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반영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올바르게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학교 교육을 통한 성장과 발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교원·학생·학부모 교육 3주체 상호 간의 의무과 책임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학교의 교육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각각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각각 교육감·학교장·교원의 책무 사항과 보호자 및 학생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제10조에 교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11조과 제12에는 각각

학교 내 출입 관리 등 학교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과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감사·수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와 제14조에는 교육활동 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15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과 제16조에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규정을, 제17조에는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는 등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형식 및 내용들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모순되는 사항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준수하고 있어 법령 체계 적합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 공청회 및 조례안 예고,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 노력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법률체계 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다만,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교육 3주체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 규정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시행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및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과 피해 교원의 민·형사상 소송 및 심리 상담·치료 등의 비용 지원, 민원인 상담 공간 마련 및 보호장비 구비·보급 등 민원처리 체계구축과 관련된 학교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학교 교육현장의 실정과 교육 3주체의 교육적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구체적인 세부 방안 마련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 제정과 시행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향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다양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개발과 체계적인 세부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보완 ·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되고,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와 교육적 성과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타 시·도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자료를 보면,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17개 시도 중 11개이며, 2023. 9. 21. 개정된 ‘교권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이후 제정된 조례는 서울, 경북 2곳임.

(2023. 10. 현재)

	조례명	제·개정 일
1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23. 4. 7. 일부개정
2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0. 6. 4. 제정
3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2023. 9. 25. 제정
4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2020. 6. 4. 제정
5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2022. 7. 12. 일부개정
6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1. 8. 10. 전부개정
7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2. 12. 30. 제정
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2023. 10. 5. 제정
9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6. 7. 28. 제정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3. 1. 3. 제정
※ 현재,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교육·시민단체가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운동에 나서고 있음		

<첨부자료 1>

■ 충청북도 교권침해 사례(2018. ~ 2023. 7. 까지)

○ 교육침해 유형별, 가해자별, 학교급별 현황

(단위:건수)

학 년 도	대 상	학 교 급	교육활동 침해 유형										기 타	계
			상 해 폭 행	모 욕 명 예 훼손	성 적 굴 욕 감 및 혐 오 감 일 으 키 는 행 위	공 무 업 무 방 해	협 박	손 괴	성 폭 력 범 죄	정 보 통 신 망 이 용 불 법 정 보 유통	정 당 한 교 육 활 동 을 반 복 적 으로 부 당 하 게 간 섭	정 당 한 생 활 지 도 불 응 하 는 행 위		
2018	학 생	초	2											2
		중	1	12	6			1		1			2	23
		고	2	15	2	1	1							21
		소계	5	27	8	1	1	1	0	1	0	0	2	46
	학 부 모 등	초		1										1
		중												0
		고				1								1
		소계	0	1	0	1	0	0	0	0	0	0	0	2
	계	5	28	8	2	1	1	0	1	0	0	2	48	
	2019	학 생	초	1	2									
중			2	27	8		4	2			2		4	49
고			1	12			3	1			1			18
소계			4	41	8	0	7	3	0	0	3	0	4	70
학 부 모 등		초									1		1	2
		중												0
		고												0
		소계	0	0	0	0	0	0	0	0	1	0	1	2
계		4	41	8	0	7	3	0	0	4	0	5	72	
2020		학 생	초	1		1								0
	중		2	7	1									10
	고		3	13	1				1					18
	소계		6	20	3	0	0	0	1	0	0	0	0	30
	학 부 모 등	초		1										1
		중											1	1
		고												0
		소계	0	1	0	0	0	0	0	0	0	0	1	2
	계	6	21	3	0	0	0	1	0	0	0	1	32	

학 년 도	대 상	학 교 급	교육활동 침해 유형										계	
			상 해 폭 행	모 욕 명 예 훼손	성 적 굴 욕 감 혐 오 감 일 으 키 는 행 위	공 무 업 무 방 해	협 박	손 괴	성 폭 력 범 죄	정 보 통 신 망 이 용 불 법 정 보 유 통	정 당 한 교 육 활 동 을 반 복 적 으 로 부 당 하 게 간 섭	정 당 한 생 활 지 도 불 응 하 는 행 위		기 타
2021	학 생	초	2	2	1						1			6
		중	2	23	8				1				1	35
		고	2	8			1		5		1		1	18
		소계	6	33	9		1		6		2		2	59
	학 부 모 등	초									1			1
		중									1			1
		고												0
소계	0	0	0	0	0	0	0	0	2	0	0	2		
계	6	33	9	0	1	0	6	0	4	0	2	61		
2022	학 생	초	8	2									1	11
		중	5	39		1	2	1	3	1	5		3	60
		고	1	12	4	2				1			4	24
		특수	2					1						3
		각종			1									1
		소계	16	53	5	3	2	2	3	2	5	0	8	99
	학 부 모 등	초		5		2	1							8
		중		1			3							4
		고			1									1
		특수												0
		각종												0
		소계	0	6	1	2	4	0	0	0	0	0	0	13
계	16	59	6	5	6	2	3	2	5	0	8	112		
2023 .7월	학 생	초	8		2						1			11
		중	3	37			3					11		54
		고		6		1						1		8
		특수	1											1
		각종												0
		소계	12	43	2	1	3	0	0	0	1	12	0	74
	학 부 모 등	초												0
		중												0
		고												0
		특수												0
		각종												0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계	12	43	2	1	3	0	0	0	1	12	0	74		

자료제공: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첨부자료 2>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내용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달라지는 내용>

- (지금까지는) '사생활의 자유' 강조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앞으로는)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 (지금까지는) '차별받지 않을 자유' 강조 →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 수업 불가
(앞으로는) 칭찬, 상 등을 통한 학생의 동기부여
- (지금까지는) '휴식권' 강조 →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 곤란
(앞으로는) 주의, 지시를 통한 적극적 수업 참여 독려

▲ 교권 확립을 위한 유치중등 고시 마련

지난 17일(목)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 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또한 유치원도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고시 해설서를 개발하여 단위 유치원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유치원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 중재 지침을 마련한다.

▲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 (사례, 경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 예고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달라지는 내용>

- (지금까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 및 조사·수사
(앞으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
- (지금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소극적 운영 및 제한된 개최 요건
(앞으로는)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의 사안 은폐·축소 금지 의무화
-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로 회피, 침해학생 제재 조치 미흡
(앞으로는) 침해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조치사항 미이행 시 가중 조치,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기재
- (지금까지는) 단위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시도별 교원배상책임 보장 범위의 편차 존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 한정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시도별 상향평준화된 교원배상 책임보험 모델 도입,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강화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사항)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에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하여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교원지위법 개정 사항)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한다.(교원지위법 개정 사항)

▲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교원지위법 개정사항)하여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2024년부터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

3.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 제기
(앞으로는) 교원은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민원 대응팀이 접수·배분 등 체계적으로 응대
- (지금까지는) 단순·반복적 민원도 학교 구성원이 일일이 직접 대응
(앞으로는) 나이스, 인공지능(AI) 챗봇 등을 통해 자동 및 비대면 처리
- (지금까지는)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미흡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 및 제재 조치(특별교육 등) 마련,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는 교육청에서 고발
- (지금까지는) 개별 연락을 통한 준비되지 않은 상담이 다수
(앞으로는) 사전 예약 과정을 통해 '질 높은 상담'으로 전환

▲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사항). 또한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교원지위법 개정사항)

▲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한다.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한다. 또한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을 학부모에게 보급하며,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하여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하여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첨부자료 3> 입법예고 의견 검토 및 조치 결과

- 조예안 예고기간: 10월 6일 ~ 10월 11일(6일간)
- 의견접수: 총 5건
- 의견접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출자	제 정 안	입법예고 접수 의견	접수 의견 조치결과
<p>황명신 안라경 김의진 김진옥</p>	<p>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관련 사실을 축소·은폐해서는 아니되며, 교권보호 책임관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극적으로 신속한 조사 및 대응 2. 피해 교원 보호와 치유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3.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신고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상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조치 등 2차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 시행 5.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범죄 행위 발생 시 수사 기관 신고 6. 분쟁 발생 시 민원인 응대 및 갈등 중재 7. 학생·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p>제5조(학교장의 책무) 조항의 업무담당자 지정에 반대.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학교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을 불필요하며, 업무담당자 지정에 따른 학교 내 갈등이 빈번히 발생 우려</p>	<p>○ 미반영 - 학교장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책임자이지만, 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 및 업무담당자 지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p>

<p>전교조 총 부 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3주체(교원·학생·학생의 보호자) 상호 간의 존중·신뢰·협력의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교원을 말한다. 3. "교권"이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말한다. 4.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p>I.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보호를 명문화하고 지원정책도 강화하기 위해 목적에 충청북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부분을 '교육활동집행을 예방하고' 바꾸어 명확히 해야 함. <p>[충북조례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3주체(교원·학생·학생의 보호자) 상호 간의 존중·신뢰·협력의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II.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권의 정의 "교권"이란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의 권위 존중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의 권리(權利)를 말한다. 2. 교육활동집행 "교육활동집행"란 보호자, 학생, 동료교원 등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교육분쟁 "교육분쟁"이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4. 생활지도 	<p>○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의견은 임법에 고된 조례안이 아닌 의안으로 접수 되기 전 검토 중에 있던 다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며, 제시한 의견들의 많은 부분이 조례안에 반영된 상태임.
----------------------	--	--	--

	<p>제2조에 따른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말한다.</p> <p>5. "학생생활지도"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호와 법 제14제2항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2조제4호 및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p> <p>6.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3조(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는 교원의 전문적인 교육활동 역량과 학생의 학습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원·학생·학부모의 보호(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원의 교육활동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3. 교원은 학생,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4.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 	<p>"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행위를 말한다.</p> <p>[충북조해인] 제2조(정의)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의 교원을 말한다 3. "교권"이란 교원의 기본적인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말한다 4.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말한다 5.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p>III. 교육감과 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책무 사항을 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감의 책무 1) 의견반영
--	--	---

<p>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 교원 보호와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여야 한다.</p> <p>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2.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진담 조직 구성·운영 3.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교원·학생보호가 대상 교육 홍보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 심리상담, 치료 등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 5. 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처리 환경 조성 및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교육감은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p>	<p>- (전북)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교원보호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장 및 교감(원감) 등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경우, 승진 및 중임 심사에 반영하는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p> <p>2) 예방교육</p> <p>- 현행 교원지위법 제16조의3(1)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대상을 '교직원과 학생, 그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예방교육의 대상을 '교장, 교감'으로까지 확대.</p> <p>[충북(주래인)]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등의 교원) ① 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교원연수 교육과정에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대한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3) 예산 확보</p> <p>- 노력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로 명확히 해야 함.</p> <p>[충북(주래인)]</p>
--	---

<p>시 관련 사실을 축소·은폐 해서는 아니 되며, 교권보호책임관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 및 대응 2. 피해 교원 보호와 치유·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3.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신고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상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조치 등 2차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 시행 5.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범죄 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 6. 분쟁 발생 시 민원인 응대 및 갈등 중재 7. 학생·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8.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치 <p>제6조(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2. 학교·학급 운영에 관한 업무 3. 교육·진문성과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자기개발 4.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p>제7조(보호자의 의무)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p>	<p>② 교육감은 제4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전북주제】 제8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4) 실태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정황을 세우는 반영한다. 조사시 교원의 심리상태조사도 포함하여 교원의 치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p>2. 학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고시인장은 '검사·상담·치료 권고, 사전협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물리적 제지, 수업 분리' 등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문제는 이런 생활지도 방식이 보호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상황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장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고, 이를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 - 학교장은 교사의 귀책사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사조치(담임교체, 병가, 파견, 휴직 등)를 해서는 안됨을 명시 <p>【전북주제】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육활동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	---

	<p>어서는 아니 된다.</p> <p>㉔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㉕ 보호자는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p> <p>㉖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㉗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제8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등의 학습자 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p> <p>②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p> <p>1.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의도적·반복적으로 방해, 간섭, 거부하는 행위</p> <p>2.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p> <p>3. 교원에게 성적 언동이나 폭언 및 폭력 등을 하는 행위</p>	<p>1. 지체 없는 피해교원 보호</p> <p>2. 교육감 보고</p> <p>3. 교육활동 침해 발생 즉시 침해대상을 학교장이 피해교원과 분리·보호조치</p> <p>4.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에 대하여는 경찰 등에 신고</p> <p>5.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치료가 필요할 때 특별휴가나 병가 사용</p> <p>3.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책무</p> <p>-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③ 및 제13조(보호자)4, 제14조(교원)5 규정을 확인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가 헌법이나 법률과 같은 상위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자치법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안의 내용은 교육기본법의 내용보다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후 조항에서 이러한 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있어야 이 조항도 의미있음.</p> <p>- (고시안)④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라는 표현 대신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초중등교육법 18조 4의 2를 재확인하는 기술로 대체)</p> <p>[생활지도에 관한 고시]</p>
--	--	--

	<p>4. 교원의 교육활동 중 무단 촬영, 녹음, 녹화, 녹음, 녹화 등의 행위</p> <p>제9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 지도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장과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2. 교육활동 침해 피해 관련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상해·상당심리 치료비 등의 비용지원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와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이 제8조제2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해 조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교권 침해 행위 학생과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취할 수 있는 생활지도 보장 방안 마련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요청 또는 교육활동
<p>제10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신,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p>IV.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p> <p>- 교원은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없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칙은 학교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 등)들의 협의로 민주적으로 제정될 수 있다. 또한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p> <p>[중복조례안]</p> <p>제9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 지도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p>	

	<p>침해 신고 시 교권보호위원회 즉시 개최</p> <p>5.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운영</p> <p>6. 교육활동 공간 내 비상벨 설치, 영상 및 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보급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p> <p>7.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p> <p>8.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p> <p>② 교육감은 제1항 제2호의 교원 보호조치 및 교원에 대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제2항의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p> <p>④ 제9조제1항제5호의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p>	<p>포함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1.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p> <p>2.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을 위한 민·형사상 소송비, 심리 상담 및 치료비 등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비용지원</p> <p>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호를 비롯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로 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학교 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마련</p> <p>4. 재조제안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과 교원이 주위·훈육·훈계·징계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취할 수 있는 생활지도 보장 방안 마련</p> <p>5.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요청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 교권보호위원회 즉시 개최</p> <p>6.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침해 긴급지원단' 구성·운영</p> <p>7. 교육활동 공간 내 비상벨 설치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p> <p>8.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보급</p> <p>9.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이나 목격이 정당하지 않은 여성 민원 대응 등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p>
<p>1. 고발의무</p> <p>- 교원지위법 제15조제4항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p>		

	<p>정한다.</p> <p>제10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 ① 교원은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원인증번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장은 교원의 동의 없이 교원의 개인정보를 학생 및 보호자 등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교원은 친제지변이나 긴급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시간 및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학생 및 보호자 등의 상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p> <p>제11조(학교 내 출입 관리 등 안전 대책) ① 교육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방문객 출입 수칙을 마련하고 교육활동에 자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방문 희망자에 대하여 학교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p> <p>③ 학교장은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p>	<p>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고발의무’를 가지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안에 “학교장 또는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포함.</p> <p>2. 법적 대응 소송비, 상담·치료비 지원</p> <p>- 현행 교원지위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은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4는 그 비용을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치료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례안에, 교육청은 ‘심리상담비용’, ‘치료비용’, ‘법적 대응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규정이 되어야 함</p> <p>3. 사생활 보호시책</p> <p>-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최근 온라인 수업 등 변</p>
--	--	--

	<p>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위협·고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4. 학교장 및 학교 출입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퇴거 요청 불응 시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p> <p>제12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감사수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감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에 대한 조사·감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감사 과정에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민원·진정 등에 대한 조사·감사·수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원에게 인사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p> <p>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의 민원 처리) ① 교육감은 폭언이나 폭행 목적이 강하지 않은 반복·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민원 처리 환</p>	<p>회된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있는 규정이나 조례안 자체에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개인연락처 보호: 교원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개인정보(연락처나 사진 등)은 교원의 동의없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근무시간 외에 연락하지 않도록 명시 - 참고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의 경우,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교원의 개인정보(연락처, 사진 등)는 교원의 동의 없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지 아니한다."라는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음. <div data-bbox="917 515 1189 110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출처조례안] 제10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 ①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교원은 친척·지인이나 긴급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시간 및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학생 및 보호자 등의 상담 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은 교원의 동의 없이 교원의 개인정보를 학생 및 보호자 등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p> </div>
--	--	--

	<p>경조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장을 민원 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 응대 일원화 체계 구축 2. 민원 유형별 응대 절차 및 처리 방식 등이 포함된 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 보급 3. 민원인 학교 방문 사전 예약체계 구축 4. 민원인 상담 공간 마련 5. 제4호의 공간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6. 진화 민원 응대 교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송출 및 녹음시스템 구축 7.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민원 처리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p>② 학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민원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3. 수업 시간 및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
<p>있다</p> <p>④ 학교장은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광학기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4. 학교 내 출입 관리 강화</p> <p>-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방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조항이 필요함.</p> <p>(사전예약) 학교방문 사전예약 규정이 필요하다.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하여 상담하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시간중에 상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함(방문시 사전 예약, 별도의 민원 및 상담 공간 확보)</p> <p>(민원처리) 학교 특성을 고려한 민원처리 방안의 마련 노력을 규정되어야 함, 민원인이 적법한 민원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권을 침해하면 교장은 학교교원보호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분쟁 발생시 민원인 응대 및 갈등 중재를 명시해야 함. (학교 출입관리) 학교 출입관리 규정이 있어야 함.</p> <p>[예시] 제10조(학교 내 출입 관리 등 안전 대책)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방문 희망자의 학교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학교장은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p>	

	<p>④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p> <p>⑤ 학교장은 반복·중복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중결 처리할 수 있다.</p> <p>⑥ 학교장은 민원인이 적법한 민원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교원보호위원회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4조(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원차유자원 센터의 기능과 함께 교원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출생 심리상담치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 2. 교육활동 및 교원 침해 예방보호 관련 학생 교원 보호자 대상 교육·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p>사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활동 또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4. 학교장 및 학교 출입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자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③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절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마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 구축 2. 민원 및 상담 전용 별도 공간 마련 <p>[출납교육청 조례]</p> <p>제1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②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학교방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마련하도록 노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 2. 민원 및 상담 공간 3. 그 밖에 학교 특성을 고려한 민원처리 방안 <p>③ 민원인이 적법한 민원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교원보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p> <p>[홍북조례(안)]</p> <p>제11조(학교 내 출입 관리 등 안전 대책)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방문 희망자에 대하여 학교시설 내부 또는 일부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p>	

	<p>4. 교권법률지원단 운영</p> <p>5. 그 밖에 교권 및 교육활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③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p> <p>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교원연수 교육과정 에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학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대한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장은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6조(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교육감은 본 조제를 준용하여 학교 등에서 교원과 함께 학생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 겸임교사 등 3. 그 밖의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 	<p>② 학교장은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4. 학교장 및 학교 출입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5. 교육활동보호센터/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 필요 - 법률지원단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대응과 상담 등 법률지원단의 업무 명시 필요 - 교육활동보호센터내 설치도 가능
--	--	---

	<p>하여 교육감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인정하는 사람</p> <p>제1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강원조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라 교육원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5〉</p> <p>제2조(기능)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 <p>제3조(법률지원단)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p> <p>제4조(법률상담) 상담대상자가 제2조의 내용으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관지원 담당부서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교원보호지원센터)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1〉</p> <p>제5조(비밀누설 금지) 법률지원단 구성원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전북조례] 제4장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제20조(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설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원장에서 분쟁이 발생한</p>	

	<p>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 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를 둔다</p> <p>제29조(지원단 업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제30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교육청의 교육주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 도교육청 법무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2.7.12> <p>제31조(임기) ① 제30조의 단원 중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제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단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7.12> <p>제32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제33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	--

	<p>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일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2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7.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법령 위반으로 풀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p>제23조(비밀상당) ① 교원이 제27조 각 호의 비밀상당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유선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방법으로 비밀상당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비밀상당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육감은 단원 중 「번호사범」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해당 교원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p> <p>[충북조례안]</p> <p>제14조(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과 함께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 예방·보호 관련 학생·교원·보호자 대상 교
--	---

		<p>육·연수 및 홍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3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 4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5 그 밖에 교권 및 교육활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③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p> <p>6. 악성민원 대처 등 구체적인 조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 침해와 민원에 의해 상처받은 교사들이 겪는 모욕감, 자존감 하락, 소진 등의 정서는 이후 교육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악성민원은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일시 분리나 접근 금지 등 적절한 조치 강구. 학생이 아닌 자의 불리는 교육 부 방안에 없어 악성민원인 조치는 검토 할 필요가 수 있음. - 악성민원 대처방안, 교권보호위원회의 신속 적극 조치, 적극 행정 면책제도의 적용확대, 침해사안 전담기구 구성, 아동학대 판단시 교육당국 의견 반영, 교원의 권리 상제화 등 고민 - 전화 민원 응대 통화 녹음체계 구축·운영 -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 관리자 지원체계 마련 등도 검토. (민원응대 창구 단일화)
--	--	---

		<p>- 학교장의 임무에 '학교 민원 처리'(학교장책임제)를 명시하여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보호자 의견 등을 수렴할 공적인 소통장구를 설치·운영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에 민원·접수처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교육활동질혜 긴급지원단)</p> <p>7. 생활지도의 방식</p> <p>1) 수업 방해 퇴실과 징계</p> <p>-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상담실 등으로 퇴실이 가능하도록 수업방해 학생 징계 규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울산교육청 조례] 제16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상) ③ 교원이 반복된 혼계에도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상담실 등으로 퇴실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원에게 폭언, 폭행, 보복, 침박을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p> </div>
--	--	--

1) 교원지위법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 학생·학부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부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전북교육청 조례] 재정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④ 빈번된 훈계에도 정상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을 학 교장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정과 교직원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 해하는 행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시점에 대하여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 분리조치 고시안⁶⁾은 상담이나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밝혔으나 이를 실행할 책임과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학 교 밖 기관, 전문 인력,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은 앞으로 해결해 야 할 과제이다.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 인 력, 예산 등에 대해 추가 대책이 없으면 온전히 학교 안에서 모 든 걸 해결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p> <p>2) 조인, 상담, 주의, 훈육, 훈계에 대해 - 교민의 지점/구체화 할것인지의 의미</p> <p>3) 유치원 교사들에게 생활지도 권한 부여</p>
--	--	--

		<p>- 현재 고시안은 유치원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음 뿐만 아니라 극단적이고 실효성 없는 '출석정지, 퇴학'만 있음</p> <p>- 학령이 낮을수록 물리적 제지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더 절실.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의 구체적 방법인 조언(전문가 상담 치료 권고 포함), 훈육(물리적 제지, 분리 포함) 등에 관한 구체적 지도 방법이 필요</p> <p>8. 교원 행정업무 경감</p> <p>- 교원지위법 시행령의 내용이긴 하지만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자료의 요구가 없도록 노력한다' 정도의 규정을 한 지역이 있음. 교육활동과 상관이 없거나 부당한 자료요구는 교권 및 학습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p>
--	--	--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교육부 고시안]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습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p>[인식]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② 학교구성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강요받지 않으며,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그 자료 요구의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p> <p>[강기조례] 제13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원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충남조례] 제1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②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원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9. 학생인권 - 교원 및 학생, 학부모의 인권을 어떻게 구현 할 것인지의 내용 포함 - 교육활동보호조례에 교원 및 학생, 학부모의 인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필요함. 하지만 어떻게 명문화할지 고민 - 기본 원칙에 명시 필요(신인격이라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록)</p>
--	--	---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결사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4)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6)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각축하여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자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인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인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훈육)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3주체(교원·학생·학생의 보호자) 상호 간의 존중·신뢰·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교원을 말한다.
3. “교권”이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말한다.
4.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말한다.
5. “학생생활지도”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와 법 제14제2항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2조제4호 및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6.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는 교원의 전문적인 교육활동 역량과 학생의 학습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원·학생·학생의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원의 교육활동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3. 교원은 학생,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4.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 교원 보호와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2.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운영
 3.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교원·학생·보호자 대상 교육·홍보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 심리상담, 치료 등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
 5. 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처리 환경조성 및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관련 사실을 축소·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권보호책임관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 및 대응
2. 피해 교원 보호와 치유·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3.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신고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상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조치 등 2차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 시행
5.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범죄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
6. 분쟁 발생 시 민원인 응대 및 갈등 중재
7. 학생·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8.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치

제6조(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2. 학교·학급 운영에 관한 업무
3. 교육 전문성과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자기계발
4.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보호자의 의무)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는 등의 학습자 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의도적·반복적으로 방해, 간섭, 거부하는 행위
2.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3. 교원에게 성적 언동이나 폭언 및 폭력 등을 하는 행위
4. 교원의 교육활동 중 무단 촬영, 녹화, 녹음, 유포 등의 행위

제9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 활동 지도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학교장과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2. 교육활동 침해 피해 관련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형사상 소송 비용, 상해·상담·심리 치료비 등의 비용지원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와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이 제8조제2항의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교권 침해 행위 학생과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취할 수 있는 생활지도 보장 방안 마련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요청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 교권보호위원회 즉시 개최
5.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운영
6. 교육활동 공간 내 비상벨 설치, 영상 및 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보급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
7.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
8.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

- ② 교육감은 제1항 제2호의 교원 보호조치 및 교원에 대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 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 공제회 등에 제2항의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④ 제9조제1항제5호의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 ① 교육감은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교원의 동의 없이 교원의 개인정보를 학생 및 보호자 등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시간 및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학생 및 보호자 등의 상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학교 내 출입 관리 등 안전 대책) ① 교육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방문객 출입 수칙을 마련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방문 희망자에 대하여 학교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4. 학교장 및 학교 출입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퇴거 요청 불응 시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감사·수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감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에 대한 조사·감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감사 과정에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민원·진정 등에 대한 조사·감사·수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① 교육감은 폭언이나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민원 처리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을 민원 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 응대 일원화 체계 구축

2. 민원 유형별 응대 절차 및 처리 방식 등이 포함된 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보급

3. 민원인 학교 방문 사전 예약체계 구축

4. 민원인 상담 공간 마련

5. 제4호의 공간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6. 전화 민원 응대 교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송출 및 녹음시스템 구축

7.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민원 처리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민원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3. 수업 시간 및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
- ④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반복·중복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민원인이 적법한 민원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원치유지원 센터의 기능과 함께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
2.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 예방·보호 관련 학생·교원·보호자 대상 교육·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4.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5. 그 밖에 교권 및 교육활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교원연수 교육과정에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대한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교육감은 본 조례를 준용하여 학교 등에서 교원과 함께 학생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그 밖의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2조(학습자)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개정 2021. 9. 24.>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보호자)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교원)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5조(교원단체)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8조(학교 규칙)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학생의 징계)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개정 2021. 3. 23., 2022. 12. 27.>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 12. 27.>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22. 12. 27.]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개정 2021. 3. 23., 2023. 9. 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21.]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3. 9. 27.>

[본조신설 2022. 12. 27.]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2012. 3. 21.>
5. 삭제<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3. 24., 2011. 7. 25.>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개정 2010. 3. 24., 2021. 3. 23., 2023. 9. 27.>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3. 24., 2011. 7. 25., 2021. 3. 23.>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신설 2011. 7. 25.>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개정 2010. 3. 24., 2011. 7. 25.>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11. 7. 25., 2012. 1. 26.>

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8. 3. 14.]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9.

27.>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9. 27.>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⑥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⑧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14조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①제15조 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

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3(특별휴가)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6.>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4. 16.>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

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6., 2019. 12. 10.>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6.>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중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15조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4. 16.>

② 관할청은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16조(실태조사)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9. 27.>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16조

제16조의2(실태조사)① 관할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및제18조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중전 제1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17조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6.>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6.>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 4. 16.>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 4. 16.>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
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
차, 결정통보 등은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신설 2019. 4. 16.>

⑨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4. 16.]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개정 2023. 9. 27.>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
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
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
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9. 27.>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18조

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중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4. 16.>]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9. 27.]

[중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19조

제20조(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6. 2. 3.]

[제19조에서 이동 <2019. 4. 16.>]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

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6., 2019. 12. 10., 2023. 9. 27.>

1. 삭제<2023. 9. 27.>
2. 삭제<2023. 9. 27.>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0조

제21조(벌칙)제10조 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3. 23.>]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1조

제22조(과태료)① 정당한 사유 없이제18조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1조에서 이동 <2021. 3. 23.>]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22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2조

제23조(특별휴가)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3조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3에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4조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신설 2023. 9. 27.>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4. 16., 2023. 9. 27.>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16., 2023. 9. 27.>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4. 16., 2023. 9. 27.]

[제18조에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5조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6조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4. 16.,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4. 16., 2023. 9. 27.>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16조에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7조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8조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7조에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9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조의4(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①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가.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부장관

나.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법 제15조 제5항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5항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③ 관할청은 법 제15조 제5항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2조의3에서 이동 <2020. 6. 9.>]

□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1. 교원이제44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제2항·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1항·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8. 12. 18.>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 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2. 1. 26., 2021. 3. 23.>

[전문개정 2011. 9. 30.]

□ 사립학교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54조의4(기간제교원)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3. 23.] [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023. 3. 23., 일부개정]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1	1
보통	3	3	3	낮음	2	2
낮음	2	2	2	없음	3	3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에 부가 조치 가능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5~7
외부기관	2호	8~10
연계선도	3호	-
교육 환경 변화	4호	11~13
	5호	14~16
	6호	17~21
	7호	17~21

【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상담)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 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훈계)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연, 제10조에 따른 상

답,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30호, 2023. 9. 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유아생활지도"란 유치원의 장(특수학교의 장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와 유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원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증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보상"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① 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원장은 유아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조언)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상담)① 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⑦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의)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을 할 수 있다.

④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훈육)①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⑥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상)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기타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원장은 이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관련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지원
 - 민형사상 소송비용, 상해·상담·심리 치료비
- 교육활동침해 학생과 교원 간 분리 조치에 필요한 비용
-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체제 구축·운영비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 환경조성비
 - CCTV, 비상벨, 녹음전화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 등
 - 민원전용 상담실 설치
-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비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
 -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 예방·보호 관련 학생·교원·보호자 대상 교육·연수 및 홍보
 -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2 관련조문

제9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 지도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피해 관련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상해·상담·심리 치료비 등의 비용지원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학교 규칙에 근거하여 학교장과 교원은 제8조제2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교권침해 행위 학생과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취할 수 있는 생활지도 보장 방안 마련

제10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 ① 교육감은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① 교육감은 폭언이나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민원처리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4. 생략)

5. 제4호의 공간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6. 영상 및 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보급

7. 전화 민원 응대 교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송출 및 녹음시스템 구축

제14조(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

2.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 예방·보호 관련 학생·교원·보호자 대상 교육·연수 및 홍보

(3. 생략)

4.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5. 그 밖에 교권 및 교육활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2028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금16,065,900천원

1) 산출내역(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교원배상책임보험	상담심리치료비	상해치료비	교권법률지원단	계
2024년	60,000	400,000	10,000	30,000	500,000
2025년	100,000	440,000	10,000	40,000	590,000
2026년	120,000	480,000	10,000	60,000	670,000
2027년	140,000	480,000	10,000	80,000	710,000
2028년	160,000	480,000	10,000	100,000	750,000
합계	580,000	2,280,000	50,000	310,000	3,220,000

* 향후 교원안심공제사업으로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육활동 침해 보호조치 비용 편입시 출연비용 등 포함

2) 산출내역(교원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비용·민원처리 환경 조성)

(단위: 천원)

구 분	안심번호서비스 (급당 50천원)	녹취전화기구축 (급120천원)	CCTV,비상벨, 휴대용보호장치 구입 등 (교당 1,000천원)	계
2024년	434,700	1,043,280	513,000	1,990,980
2025년	434,700	1,043,280	513,000	1,990,980
2026년	434,700	1,043,280	513,000	1,990,980
2027년	434,700	1,043,280	513,000	1,990,980
2028년	434,700	1,043,280	513,000	1,990,980
합계	2,173,500	5,216,400	2,565,000	9,954,900

☞ 지원교: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사립 중·고·특수학교
('24학년도 513교(병설유포함), 8,694학급/ 행정과 배치계획에 따라 산출 금액 변동)

3) 산출내역(교육활동 침해 학생 교원간 분리조치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분리공간 마련* (리모델링비)	지도 인력** (연수비 및 수당)	계
2024년	500,000	50,000	550,000
2025년	500,000	50,000	550,000
2026년	500,000	50,000	550,000
2027년	500,000	50,000	550,000
2028년	500,000	50,000	550,000
합계	2,500,000	250,000	2,750,000

*연간 10교씩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

- 50,000,000원 × 10교 × 5년 = 2,500,000천원

** 퇴직교원, 예비교원, 상담전문가, 퇴직경찰, 학부모 등으로 구성 예정

- 연수비 100,000원 × 100명 × 5년 = 10,000천원

- 수 당 40,000원 × 100명 × 10회 = 40,000천원

4) 산출내역(교육활동보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단위: 천원)

구 분	교육활동보호 콘텐츠 제작	홍보비	계
2024년	38,000	3,000	41,000
2025년	5,000	20,000	25,000
2026년	5,000	20,000	25,000
2027년	5,000	20,000	25,000
2028년	5,000	20,000	25,000
합계	58,000	83,000	141,000

다. 자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100%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3,081,980	3,155,980	3,235,980	3,275,980	3,315,980	16,065,900	
공립 유.초.중.고.특수, 사립 중.고.특수학교	3,081,980	3,155,980	3,235,980	3,275,980	3,315,980	16,065,900	
재원 조달	3,081,980	3,155,980	3,235,980	3,275,980	3,315,980	16,065,9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081,980	3,155,980	3,235,980	3,275,980	3,315,980	16,065,900
	자체수입	3,081,980	3,155,980	3,235,980	3,275,980	3,315,980	16,065,900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